

한-ASEAN FTA 관련 참고자료

2006.5.16, 외교통상부

《 목 차 》

1. 협상경위 및 협정구조	1
2. ASEAN 시장의 의의와 중요성	3
3. 각 국별 ASEAN과의 협상추진 현황 비교	5
4. 한-ASEAN FTA 상품양허 현황	7
5. ASEAN의 주요 세율구조 및 고관세품목 현황	8
6. 자동차 분야 협상결과 및 비교	9
7. 철강 및 기타 분야 협상결과	11
8. 우리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합의결과	12

1. 협상경위 및 협정구조

□ 협상 경위

- 2004.11월 : 한-ASEAN 정상회의시 FTA 협상개시 선언
- 2005. 2월 : 협상 개시
- 2005. 12월 : 한-ASEAN 정상회의시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 서명
 - 상품무역협정 본문, 상품자유화방식, 원산지 부속서 본문 합의
- 2006. 4월 : 상품무역협정 협상타결 (제11차 협상, 캄보디아 프놈펜)
 - 상품 양허안 및 원산지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협상 실무 타결
- 2005. 5월 : 한-ASEAN 경제장관회의시 최종합의
 - 태국은 국내 사정상 5월 상품협정 최종합의시 불참 의사 표명

□ 협정 구조

- 한-ASEAN FTA 협정은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투자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으로 구성
 -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 협정 기서명 (2005.12월)
- 상품무역협정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 규정, 상품 양허안, 원산지 규정을 포함한 본문 및 3개 부속서로 구성
 - 협정문 본문 : 상품무역 자유화 관련 일반규정

- 부속서 1 : 관세철폐 대상인 일반품목군 자유화 방식 및 양허안

※ 일반품목군 양허안은 발효 후 자유화 일정에 따라 상대국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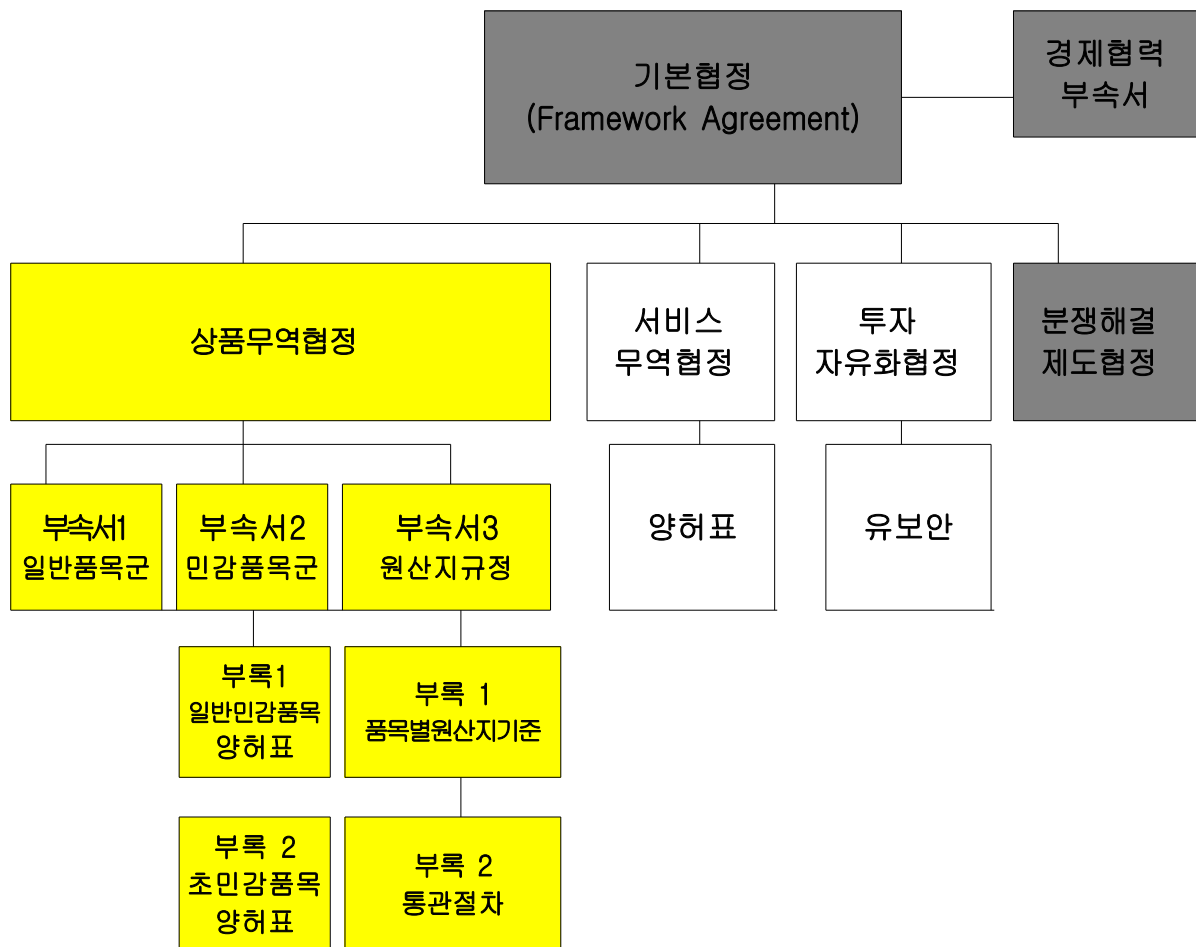
- 부속서 2 : 관세인하 및 양허제외 대상인 민감품목군의 자유화 방식 및 양허안

※ 민감품목군의 양허안은 부속서 2의 부록 형태로 첨부

- 부속서 3 : 원산지 관련 일반규정, 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통관절차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통관절차는 부록 1, 2로 동 부속서에 부록 형태로 첨부

《 한-ASEAN FTA 협정 구성 》



(2005년 12월 서명, ■ 2006년 5월 서명 예정, □ 2006년 협상 완료 목표)

2. ASEAN 시장의 의의와 중요성

- ASEAN은 우리의 제5대 교역국(535억불), 제4대 수출국(274억불), 제3대 투자국(136억불)으로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핵심적인 시장
- 우리측은 원유 및 천연가스를 제외시, '05년 ASEAN에 대해 89억불이라는 대규모 흑자를 실현

< 우리의 교역 현황('05년) >

	전체	중국	일본	미국	EU	ASEAN
교역액	5,456억불	1,005억불	724억불	719억불	710억불	535억불
수출	2,844억불	619억불	240억불	313억불	437억불	274억불
수입	2,612억불	386억불	484억불	306억불	273억불	260억불
무역수지	232억불	233억불	-244억불	108억불	164억불	14억불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ASEAN 수입액 중 원유 및 천연가스가 75억불을 차지

< 우리의 해외 직접투자 누계 현황('06.3월 누계, 신고기준) >

	전체	중국	미국	ASEAN
해외직접투자액	916억불	225억불	190억불	136억불
비중	100%	24.6%	20.7%	14.9%

※ 자료 : 수출입은행

- ASEAN은 인구 5억(총 558백만명)의 거대 경제권이며 향후 높은 성장가능성을 감안시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ASEAN 각국의 주요 지표 >

구분	인구 (백만명)	GDP (억불, '04년)	1인당 GDP (불, '04년)	실질경제성장률 (%, '05년)
인도네시아	215	2,583	1,193	5.8%
말레이시아	24.5	1,184	4,625	5.5%
필리핀	84	861	1,042	4.7%
베트남	83	454	554	7.5%
태국	64.3	1,635	2,537	3.5%
싱가폴	4.4	1,069	25,207	3.9%
브루나이	0.3	52	13,879	3.0%
미얀마	51	91	166	4.5%
캄보디아	13.8	49	358	4.3%
라오스	5.4	24	423	7.3%

- 이러한 ASEAN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국, 일본 등 우리 핵심 경쟁국은 최근 앞다투어 ASEAN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바, 우리만이 낙오될 경우 이들 국가들에 ASEAN 시장을 크게 잠식당할 우려가 존재하였는데, 금번 협상타결로 이러한 우려 해소

< 한·ASEAN 주요 교역품목('05년) >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감율	비중	품 목	금액	증감율	비중
반도체	5,242	12.3	19.1	반도체	5,921	15.9	22.7
석유제품	3,473	154.8	12.7	천연가스	4,080	25.1	15.7
무선통신기기	1,647	-4.4	6.0	원유	3,460	28.4	13.3
철강판	1,391	20.3	5.1	컴퓨터	1,421	9.5	5.5
자동차	1,226	8.5	4.5	석탄	743	28.8	2.9
합성수지	983	4.7	3.6	석유제품	646	-12.4	2.5
컴퓨터	972	-33.7	3.5	목재류	631	13.1	2.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794	117.2	2.9	동광	506	133.8	1.9
편직물	552	30.5	2.0	임산부산물	505	11.5	1.9
전자관	456	-31.5	1.7	전자응용기기	388	4.7	1.5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61.0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70.2

※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과 ASEAN과의 교역순위('05년, 한국기준) >

(단위 : 백만불)

세계 순위	ASEAN 순위	국가명	총교역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금액
9	1	인도네시아	13,230	5,046	8,184	-3,139
11	2	싱가폴	12,724	7,407	5,318	2,089
12	3	말레이시아	10,620	4,608	6,012	-1,403
20	4	태국	6,070	3,381	2,689	692
24	5	필리핀	5,536	3,220	2,316	904
27	6	베트남	4,126	3,432	694	2,738
56	7	브루나이	848	61	789	-725
92	8	미얀마	176	120	56	64
93	9	캄보디아	150	144	6	138
145	10	라오스	16	14	2	12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공산품 및 농수산물만 고려시 ASEAN 모든 국가에 대해 대규모 흑자 유지

- 인도네시아 : 수입액 중 원유 및 천연가스가 55.5%(4,506백만불), 석탄, 동광, 제지원료, 목재류가 21.8%(1,785백만불) 차지
- 말레이시아 : 수입액 중 원유 및 천연가스가 34.2%(2,055백만불), 목재류, 식물성물질이 7.6%(406백만불) 차지
- 브루나이 : 수입액 중 원유 및 천연가스가 99.99%(787백만불)을 차지

3. 각 국별 ASEAN과의 협상추진 현황 비교

□ 각 국별 ASEAN과의 협상추진 현황

- 중국은 2002년부터 상품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에 중-ASEAN FTA 상품협정 협상을 타결하고, **2005. 7.20**에 상품협정을 발효
- 일본은 2004년부터 **ASEAN** 개별국들과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바, 작년 중 말레이시아와 FTA협상을 체결하고, 금년 중 발효 예정
- 태국 및 필리핀과는 작년 중 FTA 추진에 대해 기본합의하였으나, 아직 정식체결에 이르지 못했음.
 - ※ 태국과는 금년 상반기 정식서명 예정이었으나, 태국 내부 정국사정으로 인해 FTA체결이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필리핀과는 실무 쟁점이 잔존하여 아직 FTA에 서명하지 못한 상황임.
- 인도네시아와는 현재 협상 진행 중
- 이 밖에 현재 인도, 호주·뉴질랜드도 ASEAN과 협상 진행 중

□ 중국과의 비교

- 우리는 중국에 비해 3년 늦게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자유화 속도 및 폭, 질에 있어서 중국보다 모두 앞선 것으로 평가 가능
- **ASEAN** 시장 개방 일정과 관련 중국보다 늦게 발효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철폐품목(일반품목군)에 대해 중-ASEAN과 동일한 최종 시한(2010년 원칙, 일부품목 2012년 인정)을 설정
- **0-5%**로 관세인하하는 품목(일반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오히려 관세인하 최종시한을 **2년 앞당김**.

- 중-ASEAN FTA에서는 초민감품목에 수입액 상한선이 없어 자동차, 철강 등 핵심품목들을 초민감품목에 포함하여 보호
- 그러나, 한-ASEAN FTA에서는 초민감품목에 엄격한 수입액 상한선(3%)을 설정하여 수입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등 핵심품목들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개방 유도
- 한편, 중-ASEAN FTA에서는 초민감품목을 100개(HS 6단위)만 지정하고 관세율 상한 50% 설정만을 인정했음.
- 한-ASEAN FTA에서는 200개를 초민감품목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입액은 적으나 품목수는 많은 우리 민감 농수산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게 함.

< 한-ASEAN FTA 및 중-ASEAN FTA 비교 (ASEAN 6기준) >

		한-ASEAN FTA	중-ASEAN FTA
양허시한	일반품목군 (관세철폐)	2010년 원칙, 일부 품목 2012년까지 융통성 부여	2010년 원칙, 일부 품목은 2012년까지 융통성 부여
	일반민감품목 (0-5%로 관세인하)	2016년	2018년
	초민감품목	2016년	2015년
자유화 범위	일반품목군	품목수 : 90% 이상 수입액 : 90% 이상	품목수 : 90% 이상 수입액 : 90% 이상
	초민감품목 제한	품목수 : 200개 또는 3% 수입액 : 3% 이하	품목수 : 100개

□ 일본과의 비교

- 일본은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만 FTA체결이 되었는데, 우리는 금번에 태국을 제외한 ASEAN 9개국과 FTA를 동시에 체결함에 따라 ASEAN 시장 개방의 폭 측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앞서 나가게 됨.

4. 한-ASEAN FTA 상품양허 현황

□ 한국 및 ASEAN 6개국

구 분	일반품목군 (Normal Track)	민감품목군 (Sensitive Track)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품목수기준	90% 이상	6~7%	HS 6단위 200개 또는 각국 관세 최종단위 3% 이하
수입액기준	90% 이상	7%	3% 이하
자유화 목표	2010년까지 완전 관세철폐 * 단, ASEAN 회원국에게는 5% 범위에서 2년의 추가 기간인정	2016년까지 0~5%로 관세감축	다양한 방식으로 융통성있는 보호 인정 (A) 관세율 상한 50% 설정 (B) 20%만큼 관세감축 (C) 50%만큼 관세감축 (D) TRQ 설정 (E) 양허제외 (40개)

※ 특이사항

- 한국은 협정발효 즉시 Normal Track의 70%, 2008년까지 Normal Track의 95% 이상 관세철폐
- ASEAN 6 국가는 2009년까지 Normal Track의 90% 이상 관세철폐

□ CLMV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구 분	일반품목군 (Normal Track)	민감품목군 (Sensitive Track)	
		일반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품목수기준	90% 이상	6~7%	HS 6단위 200개 또는 각국 최종단위 3% 이하
수입액기준	베트남 : 75% 이상 CLM : 불설정	불설정	불설정
주요 내용	한국 및 ASEAN 6개국 적용내용과 동일		
이행시한	베트남 : 2016년 원칙 CLM : 2018년 원칙	베트남 : 2021년 CLM : 2024년	

※ 특이사항

- 베트남은 2015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17년까지 Normal Track의 90% 이상 관세철폐
- 일반품목군 중 전체품목의 5% 범위에서 2년의 추가기간 인정

5. ASEAN의 세율구조 및 주요 고관세품목 현황

- ASEAN 국가들은 대부분 개도국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FTA**로 인한 관세인하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 MFN 실행 관세율 (단순평균) >

	한국	인니	말련	필리핀	브루나이
전품목	12.7	8.8	8.8	7.6	3.1
비농산물	7.3	8.8	9.5	6.6	3.6

※ 자료 : 한-ASEAN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WTO 통계 인용)

< 한국 및 ASEAN 주요국의 고관세 품목 비율 >

	한국	인니	말련	필리핀	베트남
20%초과	5.4	1.5	15.1	1.0	31.3
10-20%	8.3	15.0	22.9	9.4	8.9
10%미만	78.7	61.5	15.7	86.3	27.8
0%	7.6	22.0	58.6	3.3	32.0
계	100	100	100	100	100

※ 자료 : 한-ASEAN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APEC 통계 인용)

※ 우리나라는 농수산물만 고관세율을 유지하나, ASEAN측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 철강 등 핵심 공산품에 고관세율을 적용

□ ASEAN 국가별 고관세 품목

- 말레이시아 : 자동차(60~130%), 자동차부품(25~30%), 철강(50%), 타이어(40%), 폴리에틸렌(30%), 플라스틱(30%), 섬유·의류(15~20%)
- 인도네시아 : 자동차(25~80%), 철강(15%), 플라스틱(20%), 타이어(15%), 섬유·의류(10~15%)
- 필리핀 : 자동차(30%), 폴리에틸렌 및 플라스틱(15~30%), 철강(15%), 섬유·의류(10%)
- 베트남 : 자동차(30~100%), 중고차(150%), 섬유·의류(40~50%), 철강(20~40%), 플라스틱(10~15%)

6. 자동차 분야 협상결과 및 비교

□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평가

-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CKD: **Completely knocked down**)에 대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2010년까지 관세철폐**
 - 완성차의 경우도 일부 종류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2010년까지 관세철폐 또는 2016년까지 0-5%로 관세인하를 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인도네시아 : CKD 전품목(1500cc 디젤승용차 제외) 및 3000cc(디젤은 2500cc) 초과 승용차는 2010년까지 관세철폐, 기타 대부분 품목은 2016년까지 0-5%로 관세인하
 - 말레이시아 : CKD 주요 수출품목, 일부 특수차량은 2010년까지 관세철폐, 2000-3000cc 가솔린 승용차 및 화물차 등은 2016년까지 0-5%로 관세인하
 - 필리핀 : CKD 관세는 1-3%관세로 이미 개방되어 있으며, 대부분 승용차 및 화물차는 2016년까지 0-5%로 관세인하, 앰블런스 등 일부 특수용차량은 2010년까지 관세철폐
- ※ 중-ASEAN FTA에서는 초민감품목에 수입액 상한선을 두지 않아 ASEAN 각국이 대부분 자동차 핵심 품목들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
- ※ 일본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여타 ASEAN 회원국과는 FTA 체결이 지연되어 자동차 분야의 양허를 얻어내지 못했으며, 말레이시아에는 자동차 분야에서 비교적 전향적 양허를 얻어 냈으나, 이는 오래전부터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투자진출을 통한 현지생산으로 기여한 외에도 자동차 분야 양허의 대가로 광범한 자동차 분야 협력사업을 약속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임.

< 자동차 분야 ASEAN 주요국의 對한-일 양허내용 비교 >

구 분	관세율	對일본	對한국
말 련	3000cc이하 0-60% 3000cc이상 5-130% 부품 25-30%	(비교적 전향적 양허) ○ 완성승용차 · 2000cc이상 2010년 철폐 · 2000cc이하 2015년 철폐 ○ CKD : 즉시철폐 ○ 부품 : 2010년 철폐	(비교적 높은 수준 양허) ○ 수출액 중 60.3% : 2010년까지 관세 철폐 (NT, 일반품목군) - 현지조립생산제품(CKD) 중 주요품목 - 골프카 등 일부 특수차량 - 일부 자동차 부품 등 ○ 수출액 중 20.1% :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인하 (SL) - 2000-3000cc 가솔린 승용차 - 1000-1500cc 중고차 - 화물차 등 ○ 수출액 중 나머지 19.6% : 초민감 품목(HSL)으로 분류하여 보호
필리핀	승용차 30% 부품 1-30%	(미양허) ※ 단, 미타결된 실무협상 내용 - 전품목 : 2010년까지 철폐 - 일부 품목 즉시철폐	(비교적 높은 수준 양허) ○ 대부분 완성차 및 부품을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인하 (SL) ○ 일부 특수용 차량은 2010년까지 관세철폐(NT)
인 니	승용차 25-80% 부품 40-45%	(미양허) ※ 단, 일-인니 FTA 협상 진행 중	(비교적 높은 수준 양허) ○ 현지조립생산제품(CKD) 대부분 및 3000cc(디젤은 2500cc) 이상 승용차는 2010년까지 관세철폐 (NT) ○ 기타 완성승용차 및 부품은 2016년까지 5%이하로 관세인하 (SL)
태 국	승용차 10-80% 부품 30-80%	(미양허) ※ 단, 미타결된 실무협상 내용 - 완성승용차 · 3000cc이상 5년내 80%→60%로 인하 · 3000cc이하 4년후 재협의 - 부품(OEM품목) : 6년내 철폐	(미양허)
브루 나이	승용차 20% 부품 20%	(미양허)	(전향적 양허) ○ 주요 완성승용차를 2010년까지 관세철폐 (NT)
베트남	승용차 30-100% 부품 10-60%	(미양허)	(매우 제한적 양허) ○ 완성승용차 : 양허제외 ○ 대부분의 부품 : 2021년까지 5% 이하로 관세인하(SL)

※ 일-말련 FTA에서 일본이 말련에 제공을 약속한 자동차 분야 협력사업 내용

- 기술인력양성
- 자동차 부품 시험센터 설립 지원
- 금형 기술 및 인력양성
- 수출확대 지원
- 사업연결(business matching) 프로그램 운영
- 기술 라이선싱으로 생산된 자동차부품의 제3국 수출 지원
- 전문가 상호교환
- 자동차 형식 승인 등 기술표준 분야 협력

7. 철강 및 기타 분야 협상결과

□ 철강 분야

- ASEAN측은 對중국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양허, 일본과 비교하여도 전체적으로 우리측이 유리

< 자동차 분야 ASEAN 주요국의 對한-일 양허내용 비교 >

구 분	관세율	對일본	對한국
말 련	0-50%	(비교적 전향적 양허) - 10년내 완전철폐	(비교적 높은 수준 양허) ○ 수출액 중 43.3% : 2010년까지 관세철폐 (NT) ○ 수출액 중 33.9% :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인하 (SL) ○ 수출액 중 22.8% : HSL로 분류하여 보호
필리핀	3-15%	(미양허) ※ 단, 미타결된 실무협상 내용 - 對日 수입액의 60% 이상 즉시철폐	(비교적 높은 수준 양허) ○ 수출액 중 47.3% : 2010년까지 관세철폐 (NT) ○ 수출액 중 52.67% :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인하 (SL) ○ 수출액 중 0.3% : HSL로 분류하여 보호
인 니	0-20%	(미양허)	(비교적 전향적 양허) ○ 수출액 중 74.8% : 2010년까지 관세철폐 (NT) ○ 수출액 중 12.4% :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인하 (SL) ○ 수출액 중 12.8% : HSL로 분류하여 보호
태국	5-10%	(미양허) - 일부 품목 즉시철폐 - 다른 품목들은 10년 후 철폐 - 열연코일강판 일부는 TRQ 도입	(미양허)

□ 기타 ASEAN 각국의 주요 관세철폐(일반품목군 분류) 품목 (관세율 10% 이상 품목 중 예시)

-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인조필라멘트, 섬유 및 의류, 고무제품 및 타이어, 화장품류, 비누 및 세제류, 기계류 및 부품, 광학기기 및 각종기기 등

8. 우리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합의결과

□ 중-ASEAN FTA, 한-ASEAN FTA에서의 초민감품목 처리 비교

	중-ASEAN FTA	한-ASEAN FTA
품목수 기준	HS 6단위 100개 이하	HS 6단위 200개 또는 각국 관세 최종단위 3% 이하
수입액 기준	없음	3%
규정방식	2015년까지 관세율 상한 50% 설정	2016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융통성 있는 보호 인정 Group A : 관세율 상한 50% 설정 Group B : 20%만큼 관세감축 Group C : 50%만큼 관세감축 Group D : TRQ 설정 Group E 양허제외 (40개)

※ 우리는 농림수산물로만 초민감품목 구성

□ 우리 초민감품목 구성 현황

세부 항목	주요 품목 (관세율)
【Group A】 (2016년까지 관세율 상한 50% 설정)	【농산물】 치즈(36%), 오렌지(50%), 사과·배(45%) 【수산물】 새우젓(55%),
【Group B】 (2016년까지 20%만큼 관세감축)	【농산물】 감자(304%), 단옥수수(370%), 고구마(385%), 땅콩(230.5%), 백삼(222.8%), 인삼·홍삼(754.3%), 참깨·참기름(630%), 돼지고기(18~25%), 쇠고기(18~40%), 닭고기(18~22.5%), 밀크·크림·분류 등 유제품(36~176%), 꿀(243%), 화훼(25%), 밤·대추·잣(30%), 망고·망고스틴(30%) 등 【수산물】 김·미역(20%), 꽃게·기타게(14~20%), 수산가공품(20%), 오징어(10~27%) 등 【임산물】 합판·섬유판·파티클보드(8% 또는 13%)
【Group C】 (2016년까지 50%만큼 관세감축)	【농산물】 기타 전분·가공곡물(126~800.3%), 글루우(201.2%), 과일주스(54%) 등
【Group D】 (TRQ 설정)	【농산물】 매니옥(45%, 455%, 또는 887.4%), 강낭콩(27%), 【수산물】 새우(20% 또는 27%), 갑오징어(10%)
【Group E】 (양허제외)	【농산물】 쌀(관세화 유예), 마늘(360%), 양파(135%), 고추(270%), 감귤류(144%), 녹차(513.6%), 바나나(40%), 파인애플 (30%), 돼지고기(22.5~25%), 쇠고기(40%), 닭고기(18~27%) 등 【수산물】 냉동 민어(70%), 돔, 넙치, 갈치, 삼치, 조기, 꽁치 등(활어 10%, 신선·냉장 20%, 냉동 10%), 어류통조림 등 【임산물】 섬유판(8%)